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96호 2019. 5. 8.(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제2019-47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제2019-614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19-61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

제2019-61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6

제2019-621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제2019-629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39

제2019-630호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보건소 공고 제2019-9호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6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8.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288-28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946-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288-28	2009-12-28	2019-05-08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72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내촌길 350	2009-04-01	2019-05-08	소학 내척편의 예의범절을 배우는것이 사람되는 근본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716-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누룩재길 106-20	2009-04-01	2019-05-08	마을 둘레에 느릅나무가 많았고, 서쪽 주상면 내오리로 넘어가는 재를 누룩재로 불렀던 것에서 유래	
4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716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누룩재길 106-22	2009-04-01	2019-05-08	마을 둘레에 느릅나무가 많았고, 서쪽 주상면 내오리로 넘어가는 재를 누룩재로 불렀던 것에서 유래	
5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21-3, 21-5, 21-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진산길 80	2009-04-01	2019-05-08	마을 뒷산인 마이봉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90-2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길 12-8	2016-04-20	2019-05-08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장, 읍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직급 상향 조정 (일반직)
 - 1)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 4~5급 → 4급
 - 2) 거창읍장 : 5급 → 4~5급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ksh82@korea.kr

붙 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02	322	14	134	67	67	41	40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70	318	14	107	40	67	40	40	151
	4급	3 ±	3 ±							
	4~5 급	2 ±	0 ±		1		1		1 ±	
	5급	37 ±	15	3	5	4	1	3	0 ±	11
	6급 이하	628	300	11	101	36	65	37	39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 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장, 읍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일반직 4급 정원 증원 2명(안 별표)
 - 1) 본청 4급(증2) : 1명 → 3명(서기관 증1, 서기관기술서기관 증1)
 - 나. 일반직 4~5급 정원 감원 1명(안 별표)
 - 1) 본청 4~5급(감2) : 2명 → 0명(서기관 행정사무관 감1,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감1)
 - 2) 읍 4~5급(증1) : 0명 → 1명(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증1)

다. 일반직 5급 정원 감원 1명(안 별표)

1) 읍 5급(감1) : 1명 → 0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 감1)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ksh82@korea.kr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장·면장 직급(제6조 관련)

직 위	직 급
거창읍장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주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응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함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조(국장·담당관·과장·소장 직급 등)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장·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9-61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효율적 인사운영과 대상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조정(안 별표)
 - 1) 현행 : (신청일) 홀수 달 15일한, (명예퇴직 예정일) 짝수 달 말일
 - 2) 변경 : (신청일) 매월 10일한, (명예퇴직 예정일) 매월 말일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ksh82@korea.kr

붙임 「거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의 2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0	1. 31
2. 1 ~ 2. 10	2. 28
3. 1 ~ 3. 10	3. 31
4. 1 ~ 4. 10	4. 30
5. 1 ~ 5. 10	5. 31
6. 1 ~ 6. 10	6. 30
7. 1 ~ 7. 10	7. 31
8. 1 ~ 8. 10	8. 31
9. 1 ~ 9. 10	9. 30
10. 1 ~ 10. 10	10. 31
11. 1 ~ 11. 10	11. 30
12. 1 ~ 12. 10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신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p>[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제3조의2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th> <th style="width: 50%;">명예퇴직 예정일</th> </tr> </thead> <tbody> <tr><td>1. 1 ~ 1. 15</td><td>2. 28</td></tr> <tr><td>3. 1 ~ 3. 15</td><td>4. 30</td></tr> <tr><td>5. 1 ~ 5. 15</td><td>6. 30</td></tr> <tr><td>7. 1 ~ 7. 15</td><td>8. 31</td></tr> <tr><td>9. 1 ~ 9. 15</td><td>10. 31</td></tr> <tr><td>11. 1 ~ 11. 15</td><td>12. 31</td></tr> </tbody> </table> <p>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 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p> <p>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p>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p>[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제3조의 2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th> <th style="width: 50%;">명예퇴직 예정일</th> </tr> </thead> <tbody> <tr><td>1. 1 ~ 1. 10</td><td>1. 31</td></tr> <tr><td>2. 1 ~ 2. 10</td><td>2. 28</td></tr> <tr><td>3. 1 ~ 3. 10</td><td>3. 31</td></tr> <tr><td>4. 1 ~ 4. 10</td><td>4. 30</td></tr> <tr><td>5. 1 ~ 5. 10</td><td>5. 31</td></tr> <tr><td>6. 1 ~ 6. 10</td><td>6. 30</td></tr> <tr><td>7. 1 ~ 7. 10</td><td>7. 31</td></tr> <tr><td>8. 1 ~ 8. 10</td><td>8. 31</td></tr> <tr><td>9. 1 ~ 9. 10</td><td>9. 30</td></tr> <tr><td>10. 1 ~ 10. 10</td><td>10. 31</td></tr> <tr><td>11. 1 ~ 11. 10</td><td>11. 30</td></tr> <tr><td>12. 1 ~ 12. 10</td><td>12. 31</td></tr> </tbody> </table> <p>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p> <p>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p>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0	1. 31	2. 1 ~ 2. 10	2. 28	3. 1 ~ 3. 10	3. 31	4. 1 ~ 4. 10	4. 30	5. 1 ~ 5. 10	5. 31	6. 1 ~ 6. 10	6. 30	7. 1 ~ 7. 10	7. 31	8. 1 ~ 8. 10	8. 31	9. 1 ~ 9. 10	9. 30	10. 1 ~ 10. 10	10. 31	11. 1 ~ 11. 10	11. 30	12. 1 ~ 12. 10	12. 31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0	1. 31																																								
2. 1 ~ 2. 10	2. 28																																								
3. 1 ~ 3. 10	3. 31																																								
4. 1 ~ 4. 10	4. 30																																								
5. 1 ~ 5. 10	5. 31																																								
6. 1 ~ 6. 10	6. 30																																								
7. 1 ~ 7. 10	7. 31																																								
8. 1 ~ 8. 10	8. 31																																								
9. 1 ~ 9. 10	9. 30																																								
10. 1 ~ 10. 10	10. 31																																								
11. 1 ~ 11. 10	11. 30																																								
12. 1 ~ 12. 10	12. 3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4.>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 및 중복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정하는 사항 및 법령과 중복된 사항 삭제 (안 제13조1항)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위원장을 국장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우편번호:50132),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055-940-3582, FAX:055-940-3579, 이메일: sppori@korea.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지 가능

붙임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견	비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② 삭제(2017.5.10.)</p> <p>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2017.5.10.)</p> <p>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p> <p>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삭 제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목개정 2016. 1. 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30.] [대통령령 제29714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7. 6.>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5. 08.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5. 08. ~ 2018. 05. 27.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도화원3 태양광발전소 ⇒ 도화원3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7 -063호)	발전소명	도화원3 태양광발전소	도화원3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신 현 범	신 영 균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2로 92, 509동 403호 (명지동, 엘크루블루오션)	경남 거창군 북상면 용문들길 151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103 (토지 위)	
	설비용량	178.56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0. 12.	
	양수(예정)일	2019. 05. 08.	

나. 도화원4 태양광발전소 ⇒ 도화원4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7 -064호)	발전소명	도화원4 태양광발전소	도화원4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신 현 준	신 현 우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2로 92, 509동 403호 (명지동, 엘크루블루오션)	경남 거창군 북상면 용문들길 151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95-4 (토지 위)	
	설비용량	149.76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0. 12.	
	양수(예정)일	2019. 05. 08.	

다. 임불1 태양광발전소 ⇒ 임불1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7 -101호)	발전소명	임불1 태양광발전소	임불1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이 영 애	박 의 속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2길 40, 202동 903호 (코아루 2차)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3길 37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임불리 951, 953, 958 (토지 위)	
	설비용량	99.36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2. 18.	
	양수(예정)일	2019. 05. 08.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거창군 공고 제2019-630호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8일

거창군수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어있는 장애등급 표현을 제때에 개정·시행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용어 일괄정비(안 제1조~제6조)

- 1)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장애등급 ⇒ 장애정도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다. 우편번호 : 51032, 전화/팩스 : 055-940-3073/3029

이메일 : sun815@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한다.

제2조(「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3조(「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들을”로 한다.

제4조(「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의 개정)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1. 장애등급 1 ~ 2급: 150만원 2. 장애등급 3 ~ 4급: 100만원 3. 장애등급 5 ~ 6급: 70만원”을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를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며 별표 2를 삭제한다.

제6조(「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공
무원 편의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7조(「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생략)

◇ 주요내용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32조,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8 및 제60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이유

- 가.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하고자 함
- 나. 검사비 징수근거를 훈령으로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진료비 및 검사비의 면제(제3조)
 - 1)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대상을 구분하여 징수하고자 함
 - 나. 혈액검사, 흉부직접촬영 등 검사비 징수 근거 마련

4. 입법예고기간 : 2019. 5. 8. ~ 2019. 5. 28.(20일간)

5.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42 경남 거창군 거함대로 3079 거창군보건소 보건민원담당(전화 055-940-8392, 팩스 055-940-8379 또는 메일 miyeon88@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 보건민원담당(전화 055-940-83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검사비를 면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
4.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7.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8.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만 면제한다.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2.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4조 조 제목·본문, 제5조 조 제목·제1항 중 “진료비등”을 “진료비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와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 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7.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 8.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9.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2.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p>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검사비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 4.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7.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8.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만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4조(진료비등의 납부방법) 진료비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진료비 등의 납부방법) 진료비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 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생략)

[붙임 3]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95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